

청주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가단651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원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지분에 관해,
가. 피고 B와 D 사이에 2021. 10. 1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D에게 이 판결 확정일자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지분에 관해,
가. 피고 C와 D 사이에 2021. 10. 1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D에게 이 판결 확정일자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경 D가 E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는 그 무렵 이를 소외 은행에 제출하고 금원을 대출받았다.

나. D가 2019. 12. 26.경부터 위 대출에 대한 연체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청구에 따라 2021. 11. 29. 보험금 26,943,414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의 모친인 F이 2021. 10. 1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들과 D, G(각 상속지분 1/4)이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다.

라. 피고들과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이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2021. 11. 17. 위 부동산에 관해 2021. 10.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질 무렵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분할협의를 마쳐지기 전에 이미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소외 은행으로부터 D에게 대출이 실행되었고, 2019. 12. 26.경 D가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으며, 2021. 11. 29. 실제로 원고가 소외 은행에 D의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성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전부 피고들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로서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해행위 여부에 대해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룡